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8
----------	-----

2011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1. 6. 9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1. 6. 3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1. 7. 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1. 7. 4)
    - 안건상정, 질의·답변, 의결

II.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 구효중)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결산총괄

-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90억원을 포함하여 7조 1,65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7조 1,19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7%인 6조 5,737억원으로서 그 차인금액(세계잉여금)은 5,461억원임.
- 순세계잉여금 5,461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등 2,3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100억원임.

## 나. 세입결산

- 2010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1,198억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1,335억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4%임.
- 불납결손액은 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3억원임.
-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293억원과 국고보조금 129억원으로 총 3조 6,422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2,730억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 전입금 1,082억원으로 총 2조 3,812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3.4%를 차지함.
  - 기타 민간이전 수입이 207억원(0.3%)이며,
  - 자체수입은 2,0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 구조임.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73억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2억원, 재산수입 63억원, 이자수입 133억원, 보증금회수 수입 3억원과 잡수입 등 70억원임.
  - 지방교육채는 3,538억원, 이월금은 5,215억원임.

## 다. 세출결산

- 2010년도 총 세출액은 6조 5,73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로, 2,361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559억원임.
- 정책사업별로는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2,281억원을,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44억원을,
  - 교육일반 행정에 3,012억원을 지출하였음.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 이용은 없으며,
- 2010년도 예산전용액은 316억 3천1백만원으로 총 72개 사업에 156건을 전용하였음.
- 2010년도 예산 이체는 122건, 4조 2,708억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범무담당관 등 13개 부서 소관업무의 부서간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임.

마. 예비비

- 예비비는 예산액 115억 3천3백만원의 75.1%에 해당하는 86억 5천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9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1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8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

바. 세출예산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 사고이월은 385건에 2,361억원이며,
- 계속비는 없음.

사. 채권·채무 현황

- 2010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15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2,598억 3백만원이며,
-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2,795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한 5,641억 7천7백만원임.

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1,532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72억원이 증가하였고
- 2010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7,697건에 4,141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30억원이 증가하였음.

자. 재무보고서

- 2010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2조 8,183억원, 총 부채 1조 4,266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1조 3,917억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 6조 6,521억원, 총 비용 6조 4,692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29억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1. 검토 총괄

- 2010년 본예산과 1차례의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은 7조 16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1,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음.

《 최종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

2010년도						2009 예산현액 (G)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A)	추경증액 (B) 1회추경	간주처리 (C)	최종 예산액 (D=A+B+C)	전년도 이월액 (E)	예산현액 (F= A+B+C+D +E)		증감 (F-G)	증감 비율
6,315,818	602,936	97,891	7,016,645	149,040	7,165,685	7,228,011	△62,326	△0.9

○ 세입결산액(수납액) 7조 1,198억원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 6조 5,737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5,461억원이며,

-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액과 국고보조금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00억원임.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최종예산(A)	7,016,645	7,021,630	7,078,366	6,100,571	5,479,930	6,539,428
전년이월액(B)	149,040	206,381	125,670	232,305	168,426	176,364
예산현액(C=A+B)	7,165,685	7,228,011	7,204,036	6,332,876	5,648,356	6,715,793
세입결산액(D)	7,119,817	7,254,615	7,272,762	6,405,454	5,444,869	6,699,503
세출결산액(E)	6,573,690	6,733,074	6,667,954	6,046,910	5,187,716	6,241,869
세계잉여금(F=D-E)	546,127	521,542	604,808	358,544	257,153	457,635
명시이월비	0	0	43,069	35,602	23,811	20,496
사고이월비	236,114	149,040	163,313	90,068	208,494	169,406
계 속 비	0	0	0	0	0	0
국고보조잔액	3	1,603	0	0	10	323
순세계잉여금	310,010	370,899	398,426	232,874	24,838	267,409

○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4.3%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율(4.0%)보다 0.3% 증가하였고,  
 전년도(5.1%) 대비 0.8% 감소하였으나,

-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액(2,674억원)에 비하여 426억원 증가하였음.

-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의 측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예산현액(A)	7,165,685	7,228,011	7,204,036	6,332,876	5,648,356	6,715,793
(결산)세계잉여금(B)	546,127	521,542	604,808	358,544	257,153	457,635
명사이월비	-	-	43,069	35,602	23,811	20,496
사고이월비	236,114	149,040	163,313	90,068	208,494	169,406
계 속 비	-	-	-	-	-	0
국고보조잔액	3	1,603	-	-	10	323
순세계잉여금(C)	310,010	370,899	398,426	232,874	24,838	267,409
순세계잉여금율(C/A)	4.3	5.1	5.5	3.7	0.4	4.0

○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99.4%로, 전년(100.4%) 대비 1.0% 감소한 것임.

○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발생된 불용액은 3,558억원 (예산현액 5.0%), 사고이월액은 2,361억원(예산현액 3.3%)임.

- 불용액(3,558억) 중 11.5%에 해당하는 411억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된 바, 일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민원 등 사업여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부족,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자료 산정의 미흡, 일선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부족 등으로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한 바, 보다 충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별사업별 예산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늘어날수록 당해연도내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을 명심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할 것임.

- 다음연도 이월액(2,361억)은 전년도 대비 8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동절기 중지공사<sup>1)</sup>가 아닌 사업도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있고, 사고이월 후에도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바, 사고이월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 후에 사고이월 시켜야 할 것임.

- 특히, 사립학교 관련 사업 중 취소되거나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해당학교 법인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서울시로부터 이전받는 사업비가 뒤늦게 내시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 공기부족 등이 이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례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율이 높은 사업들은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이체는 총122건, 4조 2,708억, 전용은 총156건, 316억원임.

- 2010회계연도에서 이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폐지, 업무의 부서 간 이동 등에 의한 것이며,

- 전용 중 약 40%는 통계비목 간의 단순한 과목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전용의 성격에 맞지 않는 바 결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점부터 예산과목을 분명히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부터 통계비목 간 단순 과목조정을 위한 전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함부로 전용 또는 이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단 1원의 세출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 예비비 중 일부가 일반 사업비에 투입되고,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에서도 75%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금액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성격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규모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가능한 일반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 동절기 공사 기본 방향 : 동절기에는 콘크리트·미장·방수공사 등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종은 원칙적으로 중지-「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2003.건교부.

## 2. 세입예산 결산

### 가. 세입결산 총괄

○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7조 166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490억 4,000만원
예산현액	7조 1,656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	7조 1,334억 9,500만원
수납액	7조 1,198억 1,700만원
불납결손액 <sup>2)</sup>	4억 1,500만원
미수납액	132억 6,300만원 으로,

○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58억 6,8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4%임.

### 《 연도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예산액(A)	7,016,645	7,021,630	7,078,366	6,100,571	5,479,930	6,539,428
예산현액(B)	7,165,685	7,228,011	7,204,036	6,332,876	5,648,356	6,715,793
징수결정액(C)	7,133,495	7,266,569	7,284,524	6,417,353	5,530,822	6,726,553
수납액(결산액)(D)	7,119,817	7,254,615	7,272,762	6,405,454	5,444,869	6,699,503
불납결손액(E)	415	707	668	437	315	508
미수납액(F)	13,263	11,247	11,094	11,460	85,637	26,540
예산현액대비 수납율(D/B)	99.4	100.4	100.9	101.1	96.4	99.8

2) 불납결손 처분은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缺損)처분을 하는 것임.



나. 세입재원별 결산 수납율

- 세입재원 중 의존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서울시의 지방세 전입금 등으로 99.1%의 수납율(수납액 6조 440억원)을 보이고 있음.
- 「법정 이전수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 세입결산 추계 결과 세입액 감소를 예상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예산현액 대비 941억원을 미전출하였으나,
- 서울시의 2010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액 결산에 따르면, 324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미전출한 것으로 추가 정산이 요구됨.
- 서울시로부터 당해연도 말(2010.12.30.)에 ‘2010년 지방세 세입 감소 추계’를 이유로 당초 전출예정액보다 941억원을 일반적으로 미전출 통보<sup>3)</sup>함에 따라 교육청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교육청의 세입결함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법정전입금의 정기적인 전출 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될 경우 사전 예고 등으로 교육재정의 상태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10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당초 내시액) (A)	실 전입금 (B)	서울시 세입결산(안) 전입대상액 (C)	미전입액	
				예산대비 (B-A)	결산대비 [정산액] (B-C)
<b>합 계</b>	<b>2,367,165</b>	<b>2,273,030</b>	<b>2,305,435</b>	<b>△94,135</b>	<b>△32,405</b>
지 방 교 육 세	1,125,052	1,101,976	1,125,672	△23,076	△23,696
담 배 소 비 세	255,716	252,860	254,587	△2,856	△1,727
시 도 세 전 입 금	856,629	788,426	795,408	△68,203	△6,98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29,768	129,768	129,768	0	0

3) 관련대호 :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2980(2010.12.30.)-2010년 서울시 세입전망 추계치에 기초하여 가정산(미전출액 94,134,850천원)

○ 「자체수입」은 공유재산인 토지임대료 수입을 비롯한 자산매각대와 이자수입, 잡수입 등의 수납액이 세입 예산액보다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3.7%임.

- 대부분의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를 초과하여 수납되고 있고, 자산매각대나 과년도수입 등은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최대 7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예측이 곤란한 요인도 있겠으나, 세입예측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액 편성시 자체수입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계수 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예산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재원별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재정기법의 개선과 운영상의 노력에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세입 재원별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대비	
				증 감 (a-c)	수납율(%) (c/a)
<b>합 계</b>	<b>7,165,685</b>	<b>7,133,495</b>	<b>7,119,817</b>	<b>45,868</b>	<b>99.4</b>
<b>이 전 수 입</b>	<b>6,097,113</b>	<b>6,044,083</b>	<b>6,044,083</b>	<b>53,030</b>	<b>99.1</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17,258	3,629,294	3,629,294	△12,036	100.3
국고보조금	10,702	12,905	12,905	△2,203	120.6
법정 이전수입	2,367,165	2,273,030	2,273,030	94,135	96.0
비법정 이전수입	89,285	108,141	108,141	△18,856	121.1
민간이전수입	12,703	20,713	20,713	△8,010	163.1
<b>자체수입</b>	<b>193,264</b>	<b>214,104</b>	<b>200,426</b>	<b>△7,162</b>	<b>103.7</b>
기본적 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66,237	166,884	165,076	1,161	99.3
선택적 교육 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783	2,194	2,194	589	78.8
사용료 및 수수료	5,727	6,291	6,248	△521	109.1
자산임대수입	562	688	648	△86	115.3
자산매각대	4,077	6,190	5,655	△1,578	138.7
이자수입	12,238	13,279	13,279	△1,041	108.6
보증금회수	181	283	283	△102	156.4
제재금수입	447	1,660	971	△524	217.2
잡수입	794	6,779	5,657	△4,863	712.5
과년도수입 <sup>4)</sup>	218	9,856	415	△197	190.4
<b>지방교육채</b>	<b>353,767</b>	<b>353,767</b>	<b>353,767</b>	<b>0</b>	<b>100.0</b>
<b>이월금</b>	<b>521,541</b>	<b>521,541</b>	<b>521,541</b>	<b>0</b>	<b>100.0</b>

4) 출납폐쇄기한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않은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현년도 즉 그 납입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정리하고 이를 과년도수입이라 한다.

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총4억 1,600만원으로, 이 중 97.4%가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수업료결손액임.<sup>5)</sup>

《 불납 결손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결 손 내 역
			금액	금액	구성 비율	
계	165,859	176,262	164,928	415	100.0	
수업료	165,594	166,286	164,478	404	97.4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 47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 357
과태료	47	121	35	6	1.4	-학원·교습소 과태료 결손액 : 6
과년도수입	218	9,855	415	5	1.2	-채무자 무재산 등 과년도 수입 결손액 : 5

- 2010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132억 6,300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1,963억원 4,700만원) 대비 미수납율은 6.8%이며,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94억 3,500만원)이 총 미수납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음.

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 : '퇴학처분을 당한 자 및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미납액을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불납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납자에 대한 징벌 조항 : 미납자에 대한 징벌조항이 삭제되어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출석정지를 하거나 입학금 미납자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없음.

《 자체수입 중 미수납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구성 비율	
계	175,838	196,347	182,669	415	13,263	100.0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65,594	166,285	164,478	404	1,403	10.6	0 수업료 : 807 -유치원 : 4 -고등학교 : 803 0 지난년도 수업료 : 596 -고등학교 : 596
사용료 수입	4,306	5,094	5,051	0	43	0.3	-토지사용료 : 3 -시설물 사용료 : 40
임대료 수입	562	688	648	0	40	0.3	-토지임대수입 : 40
토지매각	3,922	5,990	5,455	0	535	4.0	-토지매각 : 535
변상금	276	756	314	0	442	3.3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 442
위약금	27	461	454	0	7	0.1	-입찰보증금 : 7
연체료	96	321	167	0	154	1.2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 154
과태료	47	121	35	6	80	0.6	-학원 · 교습소 과태료 : 80
기타잡수입	790	6,775	5,652	0	1,123	8.5	-기타잡수입 : 1,123
과년도수입	218	9,856	415	5	9,436	71.1	-과년도 수입 : 9,436

-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2억 1,800만원)보다 96억 3,800만원이 더 많은 98억 5,6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그 중 94억 3,6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과다발생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미수납이 매년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의 자체수입 확보 측면에서 토지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미수납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독려를 통하여 수입확보에 노력하고,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라. 자체수입 현황

○ 자체수입은 2010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103.7%로, 전년(127.6%) 대비 23.9% 감소한 것임.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체수입의 평균 수납율을 보면 모두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수납됨을 알 수 있음.

-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결산액과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반드시 당해연도 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납액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 최근 3년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내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예산액 대비 수납율 (C/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C/B)
<b>3년 평균</b>	<b>188,128</b>	<b>235,020</b>	<b>222,555</b>	<b>118.3</b>	<b>94.7</b>
<b>2010년</b>	<b>193,264</b>	<b>214,103</b>	<b>200,426</b>	<b>103.7</b>	<b>93.6</b>
교수학습활동비	169,019	169,077	167,270	99.0	98.9
행정활동수입	5,727	6,291	6,248	109.1	99.3
자산수입	4,640	6,878	6,303	135.8	91.6
이자수입	12,238	13,279	13,279	108.5	100.0
금융자산회수	181	283	283	156.4	100.0
잡수입	1,459	18,295	7,043	482.7	38.5
<b>2009년</b>	<b>190,417</b>	<b>254,892</b>	<b>242,937</b>	<b>127.6</b>	<b>95.3</b>
교수학습활동비	172,700	172,053	170,145	98.5	98.9
행정활동수입	5,210	6,859	6,739	129.3	98.3
자산수입	4,549	42,837	42,575	935.9	99.4
이자수입	5,027	17,449	17,449	347.1	100.0
금융자산회수	210	369	369	175.7	100.0
잡수입	2,721	15,325	5,660	208.0	36.9
<b>2008년</b>	<b>180,704</b>	<b>236,065</b>	<b>224,303</b>	<b>124.1</b>	<b>95.0</b>
교수학습활동비	165,063	166,062	164,120	99.4	98.8
행정활동수입	4,484	5,633	5,625	125.4	99.9
자산수입	839	20,107	19,985	2382.0	99.4
이자수입	6,098	28,398	28,398	465.7	100.0
금융자산회수	120	676	676	563.3	100.0
잡수입	4,100	15,189	5,499	134.1	36.2

마. 잉여금 처리 현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sup>6)</sup>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본예산반영 비율 (B/A)
	합 계 (A)	본예산 반영액 (B)	추경 반영액 (순증)(C)	
2008년	232,874	83,368	149,506	35.8
2009년	398,426	31,298	367,128	7.9
2010년	372,501	30,572	341,929	8.2
2011년	310,010	300,000	10,010(예상)	96.8

- 2009년도까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과 결산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계상하였다가 추경예산 편성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그 차액을 추경재원으로 편성·운용해왔으나,
- 2010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미리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상하여 201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계상하였고 결산결과 그 금액이 유사한 바,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될 수도 있으나,
- 우리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 의견과 같이 미리 다음연도(2011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3,000억원) 예상액을 확보하고자 2010년도 하반기 추진 사업의 규모 축소 등 정상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불용액을 그만큼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법령상 지출의무(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이월금) -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

### 3. 세출예산 결산

#### 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세출 예산현액은 7조 1,656억 8,500만원 에서  
지출액은 6조 5,736억 9,000만원 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1억 1,400만원 ,  
불용액은 3,558억 8,100만원 임.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7,165,685	6,573,690	91.7	236,114	3.3	355,881	5.0

- 2010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9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율은 전년도 (4.8%) 대비 0.2% 증가한 5.0%임.

#### 《 연도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D/A)
평 균	6,715,793	6,241,869	189,902	284,022	4.3
2010	7,165,685	6,573,690	236,114	355,881	5.0
2009	7,228,011	6,733,073	149,039	345,898	4.8
2008	7,204,036	6,667,954	206,381	329,701	4.6
2007	6,332,877	6,046,911	125,670	160,296	2.5
2006	5,648,356	5,187,716	232,305	228,335	4.0

-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는 411억원(11.5%),
  - 예산절감으로 43억 8,600만원(1.3%),
  - 지급사유 미발생 232억 3,100만원(6.5%)이고,
  - 집행잔액 2,871억 6,400만원(80.7%)이 불용되었음.

《 불용액 원인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2010	7,165,685	355,881 (100%)	41,100 (11.5%)		4,386 (1.3%)	23,231 (6.5%)	287,164 (80.7%)	
2009	7,228,011	345,898 (100%)	35,348 (10.2%)		50,366 (14.6%)	32,413 (9.4%)	227,771 (65.8%)	
2008	7,204,036	329,701 (100%)	31,349 (9.5%)	267 (0.1%)	16,078 (4.9%)	7,167 (2.2%)	270,761 (82.1%)	4,079 (1.2%)
2007	6,332,877	160,296 (100%)	6,075 (3.8%)	p635 (0.4%)	13,670 (8.5%)	2,337 (1.5%)	137,406 (85.7%)	173 (0.1%)
2006	5,648,356	228,335 (100%)	9,059 (4.0%)	75 (0.1%)	16,905 (7.4%)	76,776 (33.6%)	125,367 (54.8%)	153 (0.1%)

-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하겠음.
- 특히, 계획 변경 및 취소로 411억원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불용사업 내역

1) 교직원 인건비

- 교직원 급여는
  - 예산현액 3조 5,039억 6,100만원,
  - 지출액 3조 3,371억 3,300만원
  - 불용액 1,668억 2,800만원(불용율 4.8%)으로,



- 전체 불용액(3,558억 8,100만원)의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인건비 불용율(4.2%) 대비 0.6% 증가한 것임.

《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율 (C/A)	총불용액과 대비		인건비 산정방식
					총불용액 (D)	비율 (C/D)	
평균	3,325,457	3,200,855	124,602	3.7	284,022	43.8	
2010	3,503,961	3,337,133	166,828	4.8	355,881	46.9	현원기준 <sup>7)</sup>
2009	3,424,719	3,279,837	144,882	4.2	345,898	41.9	정원기준 <sup>8)</sup>
2008	3,468,512	3,294,136	174,376	5.0	329,701	52.9	정원기준
2007	3,233,161	3,145,932	87,229	2.7	160,296	54.4	정원기준
2006	2,996,932	2,947,238	49,694	1.7	228,335	21.7	정원기준

※ 인건비에 포함된 세부사업 : 교육공무원급여, 지방공무원급여, 계약직교직원급여

○ 교직원 인건비는 사업자체만 고려한다면 불용율이 높다고 볼수 없지만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결손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정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과도한 인건비 불용액 문제를 개선하고자 과거 “정원기준”으로 책정한 인건비를 “현원기준”으로 예산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2010회계연도의 인건비 불용액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그 이유는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준<sup>9)</sup>으로 산정한 정원에 비하여 2010년 중 정원<sup>10)</sup>이 감소하여 결원에 대비한 공무원 신규 총원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예측가능성이 낮은 변동요인으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2010년도에 나타난 특이사항으로 추경 이후 인건비 법정부담금의 부담요율이 낮아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인 바,

7) 현원기준 : 현원 × 현원단가 + 신규(정원-현원) × 신규단가

8) 정원기준 : 정원 × 현원단가

9) 2009. 6월 현재 정원

10) 2010. 3월 현재 정원

- 현재의 인건비 산정방식의 효과성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불용액의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것을 감안하여 정원 및 현원 등 인건비 산출기초에 대한 보다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전국 시·도교육청별 인건비 산정기준 현황 》

인건비 계상방식	2009년도	2010년도
정원중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2곳)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8곳)
현원중심	전북(1곳)	서울, 인천, 경기, 전북, 제주(5곳)
혼합식 (정원+현원)	대전, 충북, 전남(3곳)	대전, 충북, 전남(3곳)

2) 교육환경개선

-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3,954억원, 불용 339억원) 중 주요 불용사유는,

- 사립학교 신재생에너지 추진 사업(불용10억)은 에너지관리공단과 50:50 대응투자방식으로 사립학교의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부담금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대상자가 7~15개 정도에 불과하고, 선착순 형태로 마감되어 사립학교 중 선정된 학교가 없어 불용처리된 것임.
- 사립학교 유사 BTL 개축사업은 본 사업 추진시 학교에서 대응투자비 20%를 자체 부담하지 못할 경우, 개축건물 소유권이 교육감으로 귀속 후 추진된다는 점과 학교법인에서 건물 면적에 따라 20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하는 문제 등으로 신청하는 사립학교가 없어 설계비(25억 8,000만원)가 불용된 것임.
- 무학초 석축보수(3억 2,000만원), 동마중 흙통교체(3,000만원)와 승덕초 정문확장(6,000만원)은 자치구청 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되었으며,
- 중앙고 보행통로설치(1억 1,000만원)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문화재보존 관계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진관고 운동장개선 사업(3억 5,000만원)은 당해연도 내 '환경영향평가' 지연, 남산초(교직원)지하주차장(25대) 설치(6억 4,100만원)는 서울시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제성이 결여로 당초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광운중 옹벽설치 및 배수로공사(2억원)는 옹벽절토공사(비오톱 1등급 지역)가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음.

### 3) 학교기타시설증축

○ 사업비 예산현액(3,320억) 중 295억(8.9%)이 불용되었음.

○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 서울디지털과 도서관 증축(5억 9,400만원)은 민원관계로, 청암예술학교 체육관 건립(10억원)은 부지 소유권 문제로, 영락고 체육관 건립(7억 7,000만원)은 도시계획 미승인, 수락고 특별교실 증축은(5,000만원) 건축법상 저축으로 인한 사업취소로 불용되었는 바,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례로 판단됨.
- 연신중 복합화 사업(7억 3,000만원)은 은평구와 협약하여 병행 추진 예정으로, 신구초 복합화(27억 5,000만원) 사업연계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신학초 복합화사업(7억 4,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이 필요하였으나 도봉구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전액불용된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의욕만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발생한 결과임.

#### 《 주요 시설사업비 불용사유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A)	결산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 (=A-B-C)	불용율(D/A)	불용사유별			계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교육환경 개선	395,353	312,292	49,166	33,895	8.6	11,017 (32.5)	107 (0.3)	22,771 (67.2)	33,895 (100.0)
학교기타 시설증축	332,081	199,753	102,738	29,590	8.9	11,640 (39.3)	5,000 (16.9)	12,950 (43.8)	29,590 (100.0)
학교신설	237,731	161,713	47,412	28,606	12.0	8,598 (30.0)	8,225 (28.8)	11,783 (41.2)	28,606 (100.0)
BTL사업 관리	89,245	82,013	0	7,232	8.1	0 (0.0)	3,256 (45.0)	3,976 (55.0)	7,232 (100.0)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91,226	54,980	29,368	6,878	7.5	2,435 (35.4)	0 (0.0)	4,443 (64.6)	6,878 (100.0)

#### 4) 학교신설사업

- 학교신설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의 불용액으로 예산현액(2,377억) 대비 286억원 (12.8%)이 불용되었음.

불용 주요내역을 보면,

- 답십리초병설유치원과 이문초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단설유치원 전환예산(2교, 10억 8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이문초병설유치원은 학급증설(2학급)로, 답십리초병설유치원은 통학구역내 재개발 사업 시기에 맞추어 교실증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단설 유치원 전환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소송 등으로 장기 지연됨에 따라 가재울초등학교의 개교시기가 2014년 3월에서 2015년 3월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36억 9,000만원)와 건설비(39억원) 전액(75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가재울중학교의 경우, 토지매입비(23억 2,000만원)는 가재울뉴타운3구역 조합과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감정평가를 보류한 상태로 동일구역내 가재울고 부지매입과 함께 추진예정이며, 건설비(25억 7,000만원)도 가재울고 설립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전액(48억 9,100만원) 불용되었음.
- 삼각산고 토지매입비(232억 4,700만원) 중 미지급 잔액(33억 3,400만원)은 미아뉴타운지구 12구역 조합원간에 소송중에 있어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되었음.

- 학교신설에 대한 예산은 부지매입, 설계, 공사 등이 장기간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고, 사업진행에 있어 많은 절차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는 하나, 학교신설이 결정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개교시기 지연 등 문제로 이어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어 신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할 것임.

#### 5)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는 예산현액(9,018억원) 대비 128억원 (1.4%)이 불용처리되었음.

-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사립학교법」,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등에 따라 사립 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등에 대하여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학교운영비 불용(21억원)은 건강보험부담금 미부담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감액으로 발생하였으며,
- 인건비 불용(106억원)의 경우, 예산편성시 교직원 정원수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고호봉자의 중도 퇴직 후 저호봉자 기간제 교원 임용 및 교원 미충원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인건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인건비 산출방식 강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6)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 ○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비는

예산현액(912억 2,600만원) 대비

결산액은 549억 8,000만원(60.3%),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 6,800만원(32.2%)이며,

불용액은 68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7.5%임.

- 동 사업의 당해연도 집행율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이 그 나머지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상일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외 7건 (90억 8,2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되었고, 이에 따라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사업'도 함께 이월되는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급식환경 개선 사업의 당초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인 점을 본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예산편성 당해연도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전액 사고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b>합 계</b>			10,229	-	10,229	-		
<b>급식실등 증축 소계(8교)</b>			9,082	-	9,082	-		
1	사립	상일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002	-	2,002	-	학교체육보건과	-공원용지 점용으로 인한 건축승인 지연
2	사립	해성컨벤션고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신증축	1,760	-	1,760	-	학교체육보건과	-건축허가 및 설계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
3	사립	덕원여고 학생식당증축	1,500	-	1,500	-	학교체육보건과	-학사일정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4	사립	선덕고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신증축	1,157	-	1,157	-	학교체육보건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5	사립	정신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970	-	970	-	학교체육보건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6	사립	배화여고 학생식당증축	800	-	800	-	학교체육보건과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로 인한 공사이연
7	사립	한대부중 학생식당증축	693	-	693	-	성동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8	사립	신리범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00	-	200	-	성북교육지원청	-부족예산을 년도 본예산에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 연기
<b>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소계(7교)</b>			1,097	-	1,097	-		
9	사립	덕원여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20	-	22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0	사립	동대부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90	-	19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1	사립	선덕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80	-	18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2	사립	성보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80	-	18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3	사립	상일여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69	-	169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4	사립	관영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80	-	8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5	사립	보성여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78	-	78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6	사립	성신여고 급식실 전면 개보수 및 부분증축 설계비	50	-	50	-	학교체육보건과	-대학법인 심의 지연

7) 대응투자사업

- 2010회계연도에 집행예정이었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고 교육청 자체 예산(10억7천4백만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총1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 교과부에서 당초 지원예정금액(20억 5,200만원)의 절반인 10억 5,200만원만 교부하였기 때문에 본래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교육청이 자체예산 10억 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9개교(총31억 7,400만원)<sup>11)</sup>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부의 교부금 지원과 예산배정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15억 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의 예산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획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용과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교육청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바, 대응투자기관에 내시된 예산의 적기 교부를 강력히 요구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집행결과<sup>12)</sup> 》

(단위 : 백만원)

학교명	당초 대응투자 자원배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 유
		대응 투자액	교육청 부담	합계				
<b>합계(9교)</b>				<b>3,174</b>	<b>1,133</b>	<b>1,598</b>	<b>443</b>	
구룡초				358	28	261	69	-이월 : 설계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
상봉초				350	350	0	0	
성내초				350	343	0	7	-불용 : 낙찰 차액
고척중				350	18	332	0	-이월 :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자양중	<b>2,052</b>	<b>1,026</b>	<b>2,148</b>	350	18	332	0	-이월 : 광진구청 지원금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도봉중				358	18	323	17	-이월 :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진관고				350	0	0	350	-불용 :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사업 취소
청원고				350	0	350	0	-이월 :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신정여상고				358	358	0	0	

11) 교과부 예산(10억2천6백만원) + 교육청예산(10억7천4백만원×2회) = 31억7천4백만원

12) 단, 2010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어 집행예정이었던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사업 지원예정 예산(계획)만 대상으로 분석함.

**8) 기타 불용액과 불용율이 높은 사업**

○ 이외에도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율이 높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sup>13)</sup>은 예산현액(730억 3,600만원) 대비 64억 4,400만원(불용율 8.8%)이,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sup>14)</sup>은 예산현액(645억 8,200만원) 중 61억 5천만원(불용율 9.5%)이, 「교원임용관리 사업」<sup>15)</sup>은 예산현액(35억 5,200만원) 대비 10억 6,000만원(불용율 29.8%)이, 「학교지원인력관리사업」은 7억원이 불용(불용율 24.5%)이, 「학생선발 및 전입학 사업」<sup>16)</sup>은 예산현액(22억 5,500만원) 중 6억 6,400만원(불용율 29.4%)이, 「영어교사연수지원」 사업비<sup>17)</sup>는 예산 현액(68억 2,900만원) 대비 16억 1,100만원(불용율 23.6%)이, 「학력평가관리 사업비」<sup>18)</sup>은 예산 현액(22억 6,700만원) 대비 12억 6,000만원(불용율 55.5%)이 각각 불용처리됨.

- 13) 주요불용사유 : 장기 결석 및 고3학생 단축수업 등으로 지급일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비의 경우, 이사로 인한 지원자 감소 등으로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줄어 발생한 것임.
- 14) 주요불용사유 : 금융재산 대상자 추정액과 실제 조회결과에 따른 통보 비용 차액 발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복지부) 활용과 e-유지원 시스템(교과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이용 등 지원방법 개선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임.
- 15) 주요불용사유 : 예산편성시(전년도 12월경) 선발계획인원(전년도 수준)과 실제 선발인원 확정시기(당해년도 9월경 확정)의 차이가 있어 부득이 편성액과 집행액 간에 차액이 발생한 바 선발인원과 선발과목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불용액 발생함.

**《2010년 교원 임용시험 추진 결과》**

구분	내 용	2010년 계획	2010년 결과	내용
초등 임용 시험	선발분야	유치원, 초등, 특수초등	유치원, 초등, 특수초등	-
	선발인원	874명	596명	▽ 278명
	지원자	4,181명	4,391명	▽ 211명
중등 임용 시험	선발과목	32 과목	18 과목	▽ 14 과목
	선발인원	402명	265명	▽ 137명
	지원자	16,556명	10,785명	▽ 5,771명

- 16) 주요불용사유 : 교과부로부터 교부받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예산 중 자기주도 학습 전형 홍보책자 발간(4억1천만원)비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진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일정이 20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임.
- 17) 주요불용사유 :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교과부와 대응투자사업으로 연수형태 변경(5개월 국내+1개월 국외 ⇒ 6개월 국내)으로 1인당 연수비(12,000천원⇒6,500천원)가 감소(8억원 불용)하였고, 각종 영어연수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소(154명 감소, 5억원 불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연수기관 공개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이 발생함.
- 18) 주요불용사유 : 중학교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미 실시(불용 463백만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예산 교과부에서 중복지원(불용 445백만원), 중3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미 실시(불용 288백만원)등 불용이 발생함.



- 이외에도 09년 신종플루의 대유행 이후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 사업비」에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 중 독립문초의 부지매입(6억 900만원)은 소송 계류중으로, 재동초의 부지매입(3억 5,400만원)은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미정리로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밖에도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연수 취소(1,000만원)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임.
  
-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소요액 예측을 통하여 편성액과 집행액 간에 괴리를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줄여 잠식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5억이상) 불용발생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율 (D/A)	현소관부서 (사업당시 부서)
1	공무원 급여 (교육,지방,계약직)	3,503,961	3,337,133	0	166,828	4.8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2	교육환경개선	395,353	312,292	49,166	33,895	8.6	교육시설과
3	학교기타시설증축	332,081	199,753	102,738	29,590	8.9	교육시설과
4	학교신설	237,731	161,712	47,412	28,606	12.0	학교지원과
5	인건비재정결함보조	864,029	853,408	0	10,621	1.2	학교지원과 (사학지원과)
6	BTL사업관리	89,245	82,013	0	7,232	8.1	교육시설과
7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91,226	54,980	29,368	6,878	7.5	체육건강과 (학교체육보건과)
8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	73,036	66,592	0	6,444	8.8	교육복지담당관 (학교체육보건과)
9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64,582	58,432	0	6,150	9.5	교육복지담당관
10	기타급여	30,360	25,156	0	5,204	17.1	총무과
11	원어민교사배치	56,279	52,178	0	4,101	7.3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12	학교기본운영비	425,186	422,213	0	2,973	0.7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3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	25,656	23,019	0	2,637	10.3	총무과
14	지원기관시설	10,882	7,217	1,404	2,261	20.8	교육시설과
15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7,766	35,627	0	2,139	5.7	학교지원과 (사학지원과)
16	행정기관시설	14,790	12,420	483	1,887	12.8	교육시설과
17	영어교사연수지원	6,829	5,172	46	1,611	23.6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18	지방채원라금상환	84,519	82,921	0	1,598	1.9	교육재정과 (학교지원과)
19	학교기타운영비	28,022	26,496	0	1,526	5.4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20	학생건강증진	3,503	2,064	0	1,439	41.1	체육건강과 (학교체육보건과)
21	특수교육운영지원	20,560	18,949	183	1,428	6.9	책임교육과 (초등교육정책과)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율 (D/A)	현소관부서 (사업당시 부서)
22	교원연수지원	8,391	7,099	0	1,292	15.4	교원정책과 (초등교육정책과)
23	학력평가관리	2,267	1,007	0	1,260	55.6	교육과정과 (중등교육정책과)
24	교육재산및물품관리	1,575	392	0	1,183	75.1	교육재정과 (학교지원과)
25	교원임용관리	3,552	2,492	0	1,060	29.8	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26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5,539	14,280	210	1,049	6.8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27	영어교육내실화	30,152	29,019	129	1,004	3.3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28	통합관제운영	11,813	10,944	36	833	7.1	예산정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29	평생교육운영지원	3,993	3,206	0	787	19.7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진흥과)
30	학교지원인력관리	2,888	2,180	0	708	24.5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31	분청기관운영비	3,870	3,180	0	690	17.8	총무과
32	교실증축	16,800	13,159	2,956	686	4.1	학교지원과
33	학생생활지도지원	13,662	12,980	0	682	5.0	책임교육과 (중등교육정책과)
34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	7,067	6,391	0	676	9.6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35	학생선발및전입학	2,255	1,391	200	664	29.4	학교지원과 (중등교육정책과)
36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10,887	10,242	0	645	5.9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37	기록관운영	6,444	5,913	0	531	8.2	총무과
38	방과후학교운영	54,899	54,332	0	567	1.0	학교혁신과 (학교정책과)
39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	9,586	9,003	23	560	5.8	진로직업교육과
40	교육지원기관기타사업비	8,611	8,061	0	550	6.4	예산정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41	전국연합학력평가	9,323	8,780	0	543	5.8	교육과정과 (중등교육정책과)

#### 4. 예산 전용 및 이체

##### 가. 총괄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중 운영된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156건) 316억 3,100만원  
예산이체(122건) 4조 2,708억 2,8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합 계	278	5,360,811	4,302,459	4,302,459
이 용	0	0	0	0
전 용	156	487,055	31,631	31,631
이 체	122	4,873,756	4,270,828	4,270,828

##### 나. 전용

-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변경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에 변경 등으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 2010년 회계 중 발생한 전용은 156건, 전용액 3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연도별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건 수	156	179	197	81	49	132
증감액	31,631	45,269	75,630	34,809	17,157	40,899

- 전용 총156건 중 약40%에 달하는 62건은 단순한 과목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예산에서 사정변화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전용의 본래의 목적에 맞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2008년과 2009년 교특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보고 시에도 원가통계목 전산 입력의 오류를 지적하였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바, 예산을 편성할 때 통계비목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예산 전용은 불가피성보다는 예산운영의 편의성이 강한 성격으로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영방식이 부적절’하였다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시부터 보다 정확한 통계비목에 편성하고 세밀한 계획으로 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함.

《 2010년도 예산 전용 주요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주관부서	승인일자	사 유
				증	감			
1	원어민교사배치	보전금	0	401	0	교육과정 정책과	10-01-2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항공료 지원 사업비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26,659	0	401			
2	평생교육 운영지원	보전금	531	200	0	평생학습 진흥과	10-01-25	-학원 등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보를 위한 목 별 예산 조정
		무형자산	720	0	200			
3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건설비	2,057	247	0	동작교육 지원청	10-02-01	-학교 급식실 개선 사업의 원가통계목 전산 오류 입력 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397	0	247			
4	학교기타 운영비	민간이전	0	505	0	중등교육 정책과	10-02-03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 고 운영 분담금 지원 사업의 원가통계목 전산 오류 입력 에 따른 목별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646	0	505			
5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	민간이전	1,649	92	0	중등교육 정책과	10-02-01	-대안위탁교육확대를 위한 목별 예산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309	0	92			
6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학교회계 전출금	23,662	190	0	학교체육 보건과	10-02-03	-영등포고 노후급식시설 개 보수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건설비	16,748	0	190			
7	통합관제운영	민간이전	4	182	0	정보화 담당관	10-02-04	-차세대 Neis 구축 사업의 원가통계목 전산 오류 입력 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출연금	182	0	182			
8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강화	학교회계 전출금	1,300	170	0	과학·영재 교육과	10-02-17	-수학·과학·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주체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민간이전	1,155	0	170			
9	본청부서운영비	여비	0	2	0	기획예산 담당관	10-02-10	-조직개편 관련 부서간 부서 운영비 조정에 따른 사업별 예산 조정
	교육위원회기본 경비	여비	51,600	0	2			
10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인건비	0	15,480	0	사학지원과	10-02-19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비 지원 사업비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7,549	0	15,480			
11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6,643	1,139	0	학교체육 보건과	10-03-18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집행주 체 조정에 따른 목별 예산 조 장
		민간이전	1,164	0	1,139			
12	특수교육 운영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2,776	150	0	초등교육 정책과	10-04-06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집 행 주체 조정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운영비	1,385	0	50			
		업무추진비	18	0	1			
		민간이전	636	0	100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주관부서	승인일자	사 유
				증	감			
13	통합관제운영	민간이전	4	323	0	정보화 담당관	10-03-24	-차세대 나이스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 도출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무형자산	2,315	737	0			
		유형자산	6,086	0	1,059			
14	논술교육지원	운영비	1	105	0	교육과정 정책과	10-04-05	-논술교육거점학교, 서울고 등학생토론대회 운영 주체 조정에 따른 목별 예산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45	17	0			
		민간이전	140	0	122			
15	교육투자우선 지역지원	민간이전	9	455	0	교육복지 담당관	10-04-20	-지역기반형 교육복지체제 구축 사업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운영비	729	0	455			
16	통일안보 역사교육	학교회계 전출금	441	223	0	교육과정 정책과	10-04-23	-통일안보현장 체험 교육 사 업 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운영비	257	0	223			
1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0	67	0	총무과	10-05-0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비용 지급 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운영비	358	0	67			
18	교원노사관리	건설비	0	5	0	교육복지 담당관	10-05-18	-대한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사무기기제공을 위한 목별 예산 조정
		유형자산	0	35	0			
		운영비	540	0	40			
19	교육환경개선	건설비	1,750	895	0	학교체육 보건과	10-05-24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교 선정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4,286	0	895			
20	교육환경개선	건설비	19,067	344	0	남부교육 지원청	10-07-02	-포괄사업비 사업 주체 변경 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4,676	0	344			
21	학교기타운영비	민간이전	0	522	0	중등교육 정책과	10-07-01	-방송통신고 운영 분담금 지 원 사업의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645	0	522			
22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경상교육지 원사업비	2,200	1,000	0	기획예산 담당관	10-07-2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비 지원 결과 부족분 발생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090	0	1,000			
23	교육환경개선	학교회계 전출금	4,826	179	0	학교체육 보건과	10-08-17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교 선정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건설비	1,750	0	179			
24	특별활동활성화	전출금등	0	1	0	학교정책과	10-10-26	-서울학생 동아리 한미당 출 연팀, 설치부스 증가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368	51	0			
		운영비	196	0	52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주관부서	승인일자	사 유
				증	감			
25	계약제교직원 급여	학교회계 전출금	3,840	52	0	총무과	10-10-26	-계약제 교직원 퇴직금 신청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민간이전	60	0	52			
26	교육환경개선	건설비	19,067	94	0	남부교육 지원청	10-10-26	-포괄사업비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4,676	0	94			
27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2,035	500	0	교육복지 담당관	10-10-25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신청 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운영비	3,947	0	500			
28	기초학력부진 학생특별지도	연구개발비	0	75	0	초등교육 정책과	10-10-27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전출금등	0	66	0			
		운영비	165	0	91			
		보전금	161	0	50			
29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전출금등	64	34	0	중등교육 정책과	10-11-05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경비 집행 주체 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276	3,510	0			
		운영비	4,582	0	3,504			
		업무추진비	140	0	40			
30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정상교육 지원사업비	2,200	1,500	0	기획예산 담당관	10-11-0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지원 결과 부족분 발생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0,900	0	1,500			
31	법무관리	운영비	383	80	0	행정관리 담당관	10-11-30	-소송비용 확충과 일선학교의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목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0	2	0			
		보전금	174	0	82			
32	교육방법혁신	연구개발비	0	82	0	초등교육 정책과	10-12-13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결정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목별 예산 조정
		운영비	1,024	0	82			
33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민간이전	3,603	210	0	교육복지 담당관	10-12-17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신청결과에 따른 목별 예산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78,158	0	210			
34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0,900	42	0	기획예산 담당관	10-12-2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의 지원 결과 부족분 발생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500	0	42			
35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0,900	200	0	기획예산 담당관	10-12-2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의 지원 결과 부족분 발생에 따른 목별 예산 조정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500	0	200			



다.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간 예산의 상호 용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써,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과 2010년 9월 1일 총 2회에 걸쳐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총 122건, 금액은 4조 2,708억 2,8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110건, 금액은 4조 1,940억 9,5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연도별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건 수	122	12	28	5	2,739	581
증감액	4,270,828	76,733	4,037	29,728	2,749,780	1,426,221

- 그러나 결산서상에 이체 승인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조직개편 후 일정시점에 일괄 이체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나, 2010년 2월 10일 조직개편을 사유로 ‘교육위원회기본경비’ 세부사업 내 여비 172만원을 ‘본청부서운영비’로 전용한 뒤, 이를 다시 2010년 2월 11일 동일한 사유(조직개편)로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이체함.

-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교육위원회와 학교정책과<sup>19)</sup> 사이에는 직무권한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중 여비에 대해서만 이체를 한 것은 예산사용의 융통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한 사례로 판단됨.

《 2010년도 예산 이체 주요내역 》

(단위: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일	사유
				증	감		
1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및기타	1,498	10,035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및기타	10,035	0	10,035		
2	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0	14,600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4,600	0	14,600		
3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기관시설지원	200	1,700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평생교육기관시설지원	1,700	0	1,700		
4	기획예산담당관	학교기본운영비	0	73,933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학교기본운영비	73,933	0	73,933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교육정책국) ⑥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2.30)

1. 학교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학교자율화 총괄 및 조정
3.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업무
4. 새터민 지원 업무
5. 학부모회 운영 지도
6.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7.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기획 및 업무 총괄
10. 방과후학교 총괄·조정
1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
12. 특별활동 운영지도
13. 학생의 학예행사지도
14.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단위: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일	사유
				증	감		
5	기획예산담당관	교육공무원급여	27,166	2,960,342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교육공무원급여	2,960,342	0	2,960,342		
6	정보화담당관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	0	62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행정관리담당관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	62	0	62		
7	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급여	0	332,649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지방공무원급여	332,649	0	332,649		
8	기획예산담당관	계약제교직원급여	0	98,694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계약제교직원급여	98,694	0	98,694		
9	정보화담당관	행정정보화관리	0	1,130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화관리	1,130	0	1,130		
10	기획예산담당관	학교기타운영비	0	1,914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학교기타운영비	4,724	0	1,914		
11	정보화담당관	통합관제운영	0	11,332	0	10-01-04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행정관리담당관	통합관제운영	11,332	0	11,332		
12	학교지원과	학교신설	0	8,500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재무과	학교신설	8,500	0	8,500		
13	학교지원과	지방채원리금상환	0	10,319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재무과	지방채원리금상환	10,319	0	10,319		
14	학교지원과	지원기관시설	0	2,084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재무과	지원기관시설	2,084	0	2,084		
15	사학지원과	사립유치원재정지원	0	17,549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학교운영지원과	사립유치원재정지원	17,549	0	17,549		
16	사학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	0	8,689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학교운영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	8,689	0	8,689		

(단위: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일	사유
				증	감		
17	사학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200	582,782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학교운영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582,782	0	582,782		
18	사학지원과	교육환경개선	23,122	45,751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학교운영지원과	교육환경개선	76,543	0	45,751		
19	사학지원과	학교기타시설증축	15,531	13,333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학교운영지원과	학교기타시설증축	13,333	0	13,333		
20	교육복지담당관	교원노사관리	0	884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정책기획담당관	교원노사관리	932	0	884		
21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정책개발운영	0	358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정책기획담당관	교육정책개발운영	398	0	358		
22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17,552	2,183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2,183	0	2,183		
23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17,337	728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초등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13,946	0	728		
24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42	20	0	10-01-2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초등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운영	42	0	20		
25	학교정책과	특별활동활성화	0	570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특별활동활성화	570	0	570		
26	학교정책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 원	2,603	1,113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 원	1,113	0	1,113		
27	중등교육정책과	고입고졸검정고시관 리	0	502	0	10-01-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초등교육정책과	고입고졸검정고시관 리	502	0	502		
28	학교정책과	교원임용관리	448	2,245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원정책과	교원임용관리	2,459	0	2,459		

(단위: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액		이체 승인일	사유
				증	감		
29	초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급여	15,060	9,100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급여	15,540	0	9,100		
30	중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급여	15,600	6,440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급여	15,540	0	6,440		
31	초등교육정책과	교원연수지원	1,659	1,480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원정책과	교육연수지원	3,476	0	1,480		
32	중등교육정책과	교원연수지원	22	1,817	0	10-01-08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원정책과	교원연수지원	3,716	0	1,817		
33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지원인력관리	0	2,888	0	10-01-2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법무담당관	학교지원인력관리	2,892	0	2,888		
34	사학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200	5,460	0	10-01-2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교원정책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5,460	0	5,460		
35	학교정책과	본청부서운영비	0	2	0	10-02-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부서운영비 조정
	서울특별시교육 위원회	본청부서운영비	0	0	2		
36	중등교육정책과	교수학습개선지원	27	130	0	10-04-02	중등수석교사 시범운영업무가 중등교육정책과 로 이관됨
	교육과정정책과	교수학습개선지원	2,105	0	130		
37	교육복지담당관	중등장학활동지원	0	13	0	10-05-12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중등교육정책과	중등장학활동지원	191	0	13		
38	교육복지담당관	초등교육발전지원	0	19	0	10-05-12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초등교육정책과	초등교육발전지원	136	0	19		

## 5. 이월사업비

### 가. 전년도 이월사업비

-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283건, 총 1,490억 4,000만원이며, 이 중 1,361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128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됨.

(단위 : 백만원, %)

사업수(건)	사고이월액 (A=B+C+D)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불용율 (D/A)
283	149,040	136,191	0	12,849	8.6

- 사고이월액 대비 집행율은 91.4%로, 전년도(98.5%) 대비 7.1% 감소되었음.

- 사고이월비 중 신규초 복합화의 5개사업 42억7,7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2009회계연도에서 2010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당시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확보에 못지 않게 예산 집행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 사고이월된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고이월액 (A=B+C)	집행액 (B)	불용액 (C)	소관부서	불용사유
	<b>합 계</b>	<b>4,277</b>	<b>-</b>	<b>4,277</b>		
1	신규초 복합화	2,750	-	2,750	강남교육지원청	-계획변경(주민들의 민원 반영(시설추가) 재설계로 공사 중지)
2	서울디지털고 도서관증축	594	-	594	교육시설과	-민원관계로 사업취소
3	염광고 급식실증축	560	-	560	체육건강과	-계획취소
4	송문중 운동장스탠드그늘막설치	173	-	17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측 사업 취소 요청
5	중앙고 보행통로설치	110	-	110	교육시설과	-문화재보존관계로 사업취소
6	영동고 소강당리모델링	90	-	90	교육시설과	-사업변경관계로 사업취소

나. 다음연도(2011년)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 2010회계연도에 총385건, 금액 2,361억 1,400만원이 2011회계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870억 7,500만원(58.4%)이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 연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사고이월	건 수	385	283	315	226	133	268
	금 액	236,114	149,039	163,313	90,068	208,494	169,406

- 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 대부분 사전이행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나,
  - 우신고 수전설비 용량 증설(3억원), 환일고 변전실 교체(3억원), 배재고 울타리교체(7천만원), 한대부중 교실출입문 교체 사업(1억), 서라벌고 및 예일여고외 담장보수공사 등은 동절기 중지(물공사)공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지연, 학사일정, 동절기 공사 중지(물공사)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이 나태했던 행태라고 사료됨.
- 전액이월 사업(총 119건, 이월액 507억 1,700만원) 중에서도 사립학교 지원 사업(총112건, 이월액 450억 5,400만원)이 88.8% 차지함.
  - 상일여고 이월사업비 21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배명고 이월사업비 6,300만원에 이르기까지 사립 22교 사업 예산 187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전체 이월사업비의 7.9%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집행을 적기에 하지 않고 태만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 사립학교의 경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두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보다는 예산집행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임.

《 사립학교별 다수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학교명	이월 사업 건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사업내역
합 계			61	18,711	-	18,711	
1	사립	상일여고	2	2,171	-	2,171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2,002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169
2	사립	덕원고	3	1,920	-	1,920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220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200 -학생식당증축 1,500
3	사립	영파여고	4	1,370	-	1,370	-남관 외벽 보수 600 -남관 창호 교체공사 430 -본관 외벽보수 300 -정화조 교체 40
4	사립	선덕고	2	1,337	-	1,337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180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신증축 1,157
5	사립	한대부고	2	1,223	-	1,223	-강당 겸 체육관 증축 700 -특별교실 증축 523
6	사립	서라벌중	2	1,200	-	1,200	-강당겸체육관 증축 1,000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200
7	사립	장충고	3	1,200	-	1,200	-냉난방 개선 85 -외벽보수 450 -특별교실 증축 665
8	사립	우신고	4	1,170	-	1,170	-과학관 1층 홀보수 100 -본관 외벽보수 220 -수전설비 용량 증설 300 -특별교실 증축 550
9	사립	환일고	4	1,050	-	1,050	-변전실 교체 300 -사격장 개축 350 -수위실 개축 100 -외벽보수 300
10	사립	용화여고	2	1,000	-	1,000	-본관 바닥, 계단난간 보수 200 -특별교실 증축 800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학교명	이월 사업 건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사업내역
11	사립	한대부중	4	963	-	963	-2.3관 교실 출입문 교체 100 -3관 기계실 지붕 설치 60 -진입로 포장 공사 110 -학생식당 증축 693
12	사립	등촌중	3	870	-	870	-강당겸체육관 증축 730 -후면 외벽보수 140
13	사립	송곡여고	2	540	-	540	-냉난방 개선 420 -복도 개보수 120
14	사립	명덕고	3	538	-	538	-별관 옥상방수 54 -본관 화장실 개선 200 -본관, 별관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284
15	사립	성보고	3	530	-	530	-교사동 및 체육관 본타일 보수 150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80 -본관 외벽 보수 200
16	사립	남강고	3	390	-	390	-체육관 마루바닥교체 150 -체육관 지하교실 방수 90 -후문 축대보수 및 담장교체 150
17	사립	서라벌고	4	390	-	390	-노후 담장 교체 100 -연결통로 방수 30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00 -정보관동 옥상 방수 60
18	사립	배재고	2	220	-	220	-운동장 보수 150 -울타리 교체 70
19	사립	목동고	2	210	-	210	-운동장 배수로 보수공사 150 -노후담장교체 60
20	사립	예일여고	2	200	-	200	-강당 외벽 보수 100 -담장 보수 100
21	사립	한성고	3	156	-	156	-담장 석축 보수 28 -문무관 담장 석축 28 -신관 후면 축대 보수 100
22	사립	배명고	2	63	-	63	-담장보수 33 -야구장 담장 보수 30

-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도 전액 불용(6건, 42억 7,700만원)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 사고이월 당시,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할 것인지 사고이월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사고이월 금액 결정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고이월비를 과다 하게 편성하기 보다는 치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적정 금액만을 최소화하여 이월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사고이월금이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이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검토하여 이월사업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특히,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2011년 추경 예산을 비롯하여 2012년 예산편성시에는 더욱 면밀한 점 검으로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고이월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 이 예상되는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이월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 인 개선이 필요함.

《 전액 사고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합 계	50,717	-	50,717	-		
1	공립	당곡중 학교기타시설 증축	2,090	-	2,090	-	동작교육지원청	-관악구청과 복합화(주차장, 체육관 등) 협의로 인한 설계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
2	사립	상일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2,002	-	2,002	-	학교체육보건과	-공원용지 점용으로 인한 건축승인 지연
3	공립	대왕초 복합화	1,998	-	1,998	-	강남교육지원청	-설계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	사립	성남고 강당겸체육관 증축	1,770	-	1,77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5	사립	연세대재활학교 특별교실 및 강당 증축	1,768	-	1,768	-	사학지원과	-장기 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6	사립	해성컨벤션고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신증축	1,760	-	1,760	-	학교체육보건과	-건축허가 및 설계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7	사립	덕원여고 학생식당증축	1,500	-	1,500	-	학교체육보건과	-학사일정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8	사립	예원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1,300	-	1,300	-	중부교육지원청	-증축부지가 국가 지정문화재 덕수궁 (중명전)과 인접하여 문화재청 허가 지연
9	사립	선덕고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신증축	1,157	-	1,157	-	학교체육보건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0	사립	영도중 특별교실 증축	1,150	-	1,15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지연
11	사립	한국구화학교 특별교실 증축	1,057	-	1,057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12	사립	서문여고 체육관 리모델링	1,050	-	1,050	-	사학지원과	-본예산 배정재원 부족으로 추경예산과 합하여 사업추진하여 공사기간 부족
13	사립	한국삼육학교 특별교실 증축	1,000	-	1,000	-	사학지원과	-설계계획 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계약 지연
14	사립	한신초 강당겸체육관	1,000	-	1,000	-	북부교육지원청	-설계변경 2차에 따른 설계 납품기일 및 착공지연
15	사립	서리벌중 강당겸체육관	1,000	-	1,000	-	성북교육지원청	-식당증축 병행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16	사립	화곡중 특별교실 증축	978	-	978	-	사학지원과	-안전진단결과 교실규모 변경(6살-3살)에 따른 설계, 건축승인 지연
17	사립	정신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970	-	970	-	학교체육보건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8	공립	양재초 강당	930	-	930	-	강남교육지원청	-설계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9	사립	용화여고 특별교실 증축	800	-	8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0	사립	배화여고 학생식당증축	800	-	800	-	학교체육보건과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로 인한 공사지연
21	사립	세명컴퓨터고 강당겸체육관 증축	780	-	780	-	사학지원과	-장기 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2	사립	등촌중 강당겸체육관 증축	730	-	730	-	강서교육지원청	-예산관계로 임차지연과 1개층 추가로 인한 계약 변경일정 조정
23	사립	영일고 강당겸체육관 증축	700	-	700	-	사학지원과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4	사립	한대부고 강당겸체육관 증축	700	-	7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5	사립	보인중 신관 교실 증축	700	-	700	-	강동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26	사립	한대부중 학생식당 증축	693	-	693	-	성동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27	사립	장충고 특별교실 증축	665	-	665	-	사학지원과	-공사진행 중 석축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로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 지연
28	사립	영락유헤스고 특별교실 증축	650	-	650	-	사학지원과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9	사립	광영여고 정보센터 증축 공사	640	-	640	-	사학지원과	-공사비부족액 확보 관계로 설계및 계약지연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30	사립	영파여고 남관 외벽 보수	600	-	6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31	사립	해성여고 외벽 보수	600	-	6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32	사립	선덕중 특별교실 증축	600	-	600	-	북부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3	사립	우신고 특별교실 증축	550	-	550	-	사학지원과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34	사립	한대부고 특별교실 증축	523	-	523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35	사립	한영고 도서실 증축	500	-	5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장기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36	사립	중앙여중 특별교실 증축	500	-	500	-	서부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7	사립	상명초 다목적실 증축	500	-	500	-	북부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8	사립	세화여고 외벽 보수	480	-	48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 지연
39	사립	장충고 외벽 보수	450	-	4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40	공립	구룡초 인조잔디	450	-	450	-	강남교육지원청	-설계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1	사립	영파여고 남관 창호 교체	430	-	43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42	사립	송곡여고 냉난방 개선	420	-	42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 지연
43	사립	우신중 본관 외벽보수	400	-	400	-	남부교육지원청	-동절기 한파로 인해 외벽 부착 불가로 인한 공사 지연
44	사립	정의여중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400	-	400	-	북부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5	사립	환일고 사격장 개축	350	-	3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착공지연
46	사립	청원고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350	-	350	-	학교체육보건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47	사립	홍대부중 별관동보수보강	340	-	340	-	성북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설계기간 연장(설계검토회신에 대한 보완)으로 공사기간 부족
48	사립	영파여고 본관 외벽 보수	300	-	3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49	사립	우신고 수전설비 용량 증설	300	-	3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계약 지연
50	사립	환일고 변전실 교체	300	-	3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착공지연
51	사립	환일고 외벽 보수	300	-	3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폭설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52	사립	명덕고 본관, 별관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284	-	284	-	사학지원과	-설계변경 및 자재수급 지연으로 준공기한 연장
53	사립	서일정산고 외벽 보수	250	-	250	-	사학지원과	-설계 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54	사립	선일이미지니스고 교사동 외벽 보수	250	-	250	-	사학지원과	-설계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55	사립	신경여실 정문 진입로 보수	250	-	2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관계로 계약 지연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56	사립	중앙고 지붕 보수	230	-	23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57	사립	성신여중 외부축대 보수	227	-	227	-	사학지원과	-소음분진 발생 및 안전 사고 위험으로 동계방학 중 시행하여 공사기간 부족
58	사립	선일여고 운동장 옹벽 보수	220	-	220	-	사학지원과	-설계 지연 및 동절기 물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59	사립	우신고 본관 외벽 보수	220	-	22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계약 지연
60	사립	덕원여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20	-	22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61	사립	구로여정산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	-	2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설계지연으로 계약 지연
62	사립	덕원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200	-	2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지연
63	사립	동일여고 본관 외벽 보수	200	-	200	-	사학지원과	-방학 중 공사 시행 및 동절기 한파로 공사기간 연장
64	사립	상명부여고 교사동 외벽 보수	200	-	2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로 공사기간 연장
65	사립	서리별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00	-	2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관로 공사기간 연장
66	사립	성보고 본관 외벽 보수	200	-	2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67	사립	명덕고 본관 화장실 개선	200	-	200	-	사학지원과	-설계변경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68	사립	용화여고 본관 바닥, 계단 난간 보수	200	-	2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69	사립	휘문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	-	2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70	사립	서리별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00	-	200	-	성북교육지원청	-부족예산을 년도 본예산에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일정 연기
71	사립	동대부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90	-	19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72	사립	선덕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80	-	18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73	사립	성보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80	-	18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74	사립	상일여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69	-	169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75	사립	광신중 체육관 외벽보수	160	-	160	-	동작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76	-	자기주도학습전형국외연수	157	-	157	-	중등교육정책과	-계약업체의 완수금 청구 지연
77	사립	남강고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150	-	1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준공기한 연장
78	사립	남강고 후문 축대보수 및 담장 교체	150	-	1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준공기한 연장
79	사립	몽동고 운동장 배수로 보수 공사	150	-	15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지연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80	사립	배재고 운동장 보수	150	-	1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81	사립	성보고 교사동 및 체육관 본타일 보수	150	-	1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82	사립	재현고 체육부실 신축	150	-	15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83	사립	등촌중 후면 외벽보수	140	-	140	-	강서교육지원청	-학사일정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84	사립	송곡여고 복도 개보수	120	-	12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계약지연
85	사립	신광여중 노후교사 개축 설계	120	-	120	-	사학지원과	-철거 일정지연으로 설계 일정 연장
86	사립	한대부중 진입로 포장 공사	110	-	110	-	성동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87	사립	동덕여고 체육관 지붕 방수	108	-	108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준공기한 연장
88	사립	서리별고 노후 담장 교체	100	-	1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로 공사기간 연장
89	사립	예일예고 강당 외벽 보수	100	-	1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90	사립	예일예고 담장 보수	100	-	10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파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91	사립	우신고 과학관 1층 홀보수	100	-	1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계약 지연
92	사립	한성고 신관 후면 축대 보수	100	-	1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초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93	사립	환일고 수위실 개축	100	-	10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착공지연
94	사립	동덕여중 운동장 복토 및 배수로	100	-	100	-	강남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95	사립	한대부중 2,3관 교실 출입문 교체	100	-	100	-	성동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96	사립	남강고 체육관 지하교실 방수	90	-	9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준공기한 연장
97	사립	장충고 냉난방 개선	85	-	85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관계로 착공일 지연
98	사립	광영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80	-	80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99	사립	보성여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78	-	78	-	학교체육보건과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비 이월
100	공립	신북초 방수	72	-	72	-	서부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01	사립	배재고 울타리 교체	70	-	7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102	-	Wee센터 시설사업	70	-	70	-	중등교육정책과	-계약업체의 준공금 청구 지연
103	사립	휘경여중 축대 설치	70	-	70	-	동부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104	사립	목동고 노후담장교체	60	-	60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학사일정 관계로 공사기간 연장
105	사립	서라벌고 정보관동 옥상 방수	60	-	6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 파로 공사기간 연장
106	사립	한대부중 3관 기계실 지붕 설치	60	-	60	-	성동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 사기간 부족
107	사립	명덕고 별관 옥상 방수	54	-	54	-	사학지원과	-설계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108	사립	성신여고 급식실 전면 개보수 및 부분증축 설계비	50	-	50	-	학교체육보건과	-대학법인 심의 지연
109	사립	이대부중 체육실 리모델링	50	-	50	-	서부교육지원청	-교실바닥 공사지연에 따 른 공사기간부족
110	공립	인수초 별관동 분전반 및 간선교체	50	-	50	-	성북교육지원청	-체육관 증축공사 병행 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111	사립	영파여고 정화조 교체	40	-	40	-	사학지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 사기간 부족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로 마감공사 완 료시점 조정
112	사립	배명고 담장 보수	33	-	33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 파 및 폭설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113	사립	서라벌고 연결통로 방수	30	-	30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 파로 공사기간 연장
114	사립	배명고 야구장 담장 보수	30	-	30	-	학교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관 계로 공사기간 연장
115	공립	삼성초 연결복도 지붕	30	-	30	-	동작교육지원청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16	사립	한성고 담장 석축 보수	28	-	28	-	사학지원과	-학사일정 및 동절기 한 파 및 폭설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117	사립	한성고 문무관 담장 석축	28	-	28	-	학교지원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18	사립	명지고 교문 보수	25	-	25	-	사학지원과	-설계변경 및 동절기 한 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19	공립	신수중 다목적강당	8	-	8	-	서부교육지원청	-강당증축공사는 준공하 였으나 타공사 관급과 연 계 구매로 인하여 관급금 액 미집행

## 6. 민간투자사업(BTL)

### 가. 개요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sup>20</sup>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열악한 교육재정상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으로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고,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투자원금+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2005년부터 학교의 신설(33교)을 비롯하여 교실개축(57교)과 체육관 증축사업(52교)으로 총 142교, 투자비 1조 85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최초 시설물의 임대 시기는 2008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총80회 균등 상환형식으로 매년 원리금을 비롯하여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투자액의 3.2%에 해당하는 352억 4,0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음.

《 BTL사업에 대한 상환규모(2005년~2010년) 》

(단위 : 백만원, %)

사업 유형	학교수	총투자비	원리금 상환				이자		
			~09년까지	'10년	잔액	상환율	~09년까지	'10년도	'11년~
합 계	142	1,085,069	12,966	22,274	1,049,829	3.2	24,686	42,819	691,268
신 설	33	407,835	9,179	9,849	388,807	4.7	17,511	18,510	245,915
개 축	57	576,346	3,731	10,449	562,166	2.5	7,138	20,581	384,368
체육관	52	100,888	56	1,976	98,856	2.0	37	3,728	60,985

20)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제24조의 2)).



○ 2010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원리금 222억 7,400만원과 이자 428억 1,900만원을 상환 하였으며, 원리금의 두배에 달하는 상환이자<sup>21</sup>가 지출되었음.

- 서울시교육청 재원이 대부분 이전수입(85%)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부채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단계적인 조기 상환방안 등을 연구하여 이자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나. BTL 사업관리비 결산내역

○ BTL 사업관리비는 예산현액(892억 4천 5백만원) 중 820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7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불용발생 주요원인으로 금화초를 포함한 5교는 공사지체(민원, 시공사 부도, 시공사 능력부족 등)로, 창서초외9교는 공사기간 조정(이상 한파,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가 미지급되었고, 완공된 학교 중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급액 감소로 발생한 잔액임.

- BTL 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적격심사에서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추진에 따른 많은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는 하나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지연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다. 향후 BTL사업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

○ BTL사업은 시설조기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시행방식을 통해 시설을 완공하고 수년에 걸쳐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바 채무부담행위<sup>21</sup>)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만,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TL 사업을 채무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 외(Off-Budget)채무<sup>22</sup>)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추진 초기에 개략적인 의결만 받은 뒤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21)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등 :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22) 영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예산과정을 통해 의회 등 외부통제를 받는 예산(On-Budget)과 달리 예산 외(Off-Budget) 채무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선호하였으며, 의회의 지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하자 1981년 영국 의회는 ‘라이리 준칙(Ryrie Rules)’을 정하였다.(「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pp.207~22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 교과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BTL사업 추진방법 안내에 따라<sup>23)</sup>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BTL사업을 일반 채무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단순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나,
  - 2009.01.01부터 중앙정부는 민간투자법 제42제2호에 규정한 BTL사업에 한하여 총한도액·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당해 사업의 통제와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으며,<sup>24)</sup>
  - 그 밖에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는 학술연구<sup>25)</sup>에서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역시 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고 예산상의 재정부담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례와 같이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BTL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청의 BTL사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BTL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실시한다면 계약체결 전 미리 지방의회 예산으로 의결을 받고 이후 채무로써 관리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sup>26)</sup>

## 7. 특별교육재정수요

-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32호)”에 의거하여,

23)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할 경우 부채증가에 따라 이러한 사업방식을 기피하게된다는 기획처의 지적에 따라 BTL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행위로 간주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채무부담사업에서 제외함(지방자치단체 BTL사업 추진방법 안내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94, 2005.08.09)

24) 정부의 사업을 다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정부는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개정·시행되었음(2009.1.1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2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26)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인천·광주·울산·대구 등의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을 채무로 관리하고 있음

-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0.3%이내의 범위<sup>27)</sup>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를 편성하여 공·사립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 경상적·투자적 경비에 지원하는 것임.

○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으로 14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그 중 134억원이 지출되고, 2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집행건수	지원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율 (D/A)
특별교육 재정수요	222	14,160	13,401	211	548	3.9

○ 주민참여예산 T/F 및 주민간담회 지원(4,600만원),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1억 8,600만원),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사업(5,500만원),  
 체벌대안 정책개발 T/F팀 운영(1억 2,300만원),  
 2010 꿈의학교, 새로운 직업축제(2억 2,300만원),  
 재능기부운동 추진(2억 3,8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모델개발 및 자문단 운영(6,700만원) 등은  
 2010년 7월 광노현 교육감 취임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에 지원되었으며,

- 투자교육사업비 중, 광양고 체육관 연결통로 설치 5,000만원, 전동초 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분 6,700만원,  
 용산고 학생식장 증축공사 1억원,  
 휘봉고 신축공사 재설계 2억 4,600만원 등

공·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금 중,  
 영림중 신관외벽보수공사 1억원,  
 우신초 야외수영장 철거 1억원,  
 아현산업정보고 건물 노후 외벽 보수 및 도장 1억원,  
 천호중 OA 미설치분 및 특별교실환경개선 1억 2,000만원,

27)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43.

오남중 방송시설개선 및 담장보수공사 1억 3,000만원,  
강신초 학생통학로개선공사 1억 5,000만원,  
마천초 관리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2억원,  
신상중 보통교실 냉난방 개선 2억 2,000만원 등이 지원되었으나,

지원된 내용이 특별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예산사업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검토됨.

-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 계획」에 따르면, 학교지원사업의 경우 공·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림유치원 도서실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재한몽골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9,000만원 등은 지원기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집행된 것으로 교육청 예산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특정기관에 선심성으로 지원된 대표적인 낭비사례라 판단됨.
- 예비비는 세부 집행결과에 대하여 의회통제(사후승인)을 받는 반면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포괄예산으로,
  - 시의회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일반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특정사업에 지원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한 시설비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예측가능한 대규모 사업도 예산집행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의 심의없이 임의로 집행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1회계연도에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급해 개선해야 할 것임.
- 그동안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교육감의 방문학교에 선심성으로 지원되거나, 공약사업에 치중하여 집행되거나, 특정학교 편중지원 등 지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을 보였던 바,
  -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원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운영되는 것을 막고, 교육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의 단위사업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폐지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 지원 현황(5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원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 A-B-C)	사유
1	교사휴게실 설치(100교)	1,680	1,680	0	0	
2	중학교 학생 동아리실 개선 사업	1,656	1,654	0	2	-집행 잔액
3	교사휴게실 설치(100교)	320	320	0	0	
4	중학교 학생 동아리실 개선 사업	316	316	0	0	
5	전문상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302	302	0	0	
6	취봉고 신축 공사 재설계	246	246	0	0	
7	고교선택제 정착 지원비	230	230	0	0	
8	2010 꿈의 학교, 새로운 직업축제	224	215	0	9	-집행 잔액
9	보통교실 냉난방 개선	220	220	0	0	
10	서울교육종단연구 협력학교 운영비 지원	205	205	0	0	
11	초6, 중3, 고3 전환기 특별프로그램 운영	200	200	0	0	
12	독서실 현대화	200	195	0	5	-집행 잔액
13	천정 석면텍스 철거 및 조명기구 설치	200	200	0	0	
14	강당 리모델링	200	200	0	0	
15	청사 환경개선	200	168	31	1	-용동초 체육관 공동발주 하였으나 용동초에 발생한 민원으로 사업연기로 사고이월
16	원어민 활용 영어 화상수업 시범운영	200	200	0	0	
17	관리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200	200	0	0	
18	전문상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197	197	0	0	
19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187	170	0	17	-집행 잔액
20	방과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 업무 위탁	170	43	0	127	-예산절감 잔액
21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 추진 경비	168	168	0	0	
22	교육(재능) 기부 운동 추진(2회)	238	238	0	0	
22	강산초 학생통학로 개선 공사	150	150	0	0	
23	시설관리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전 경비	130	130	0	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원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 A-B-C)	사유
24	오남중 방송시설개선 및 담장보수 공사	130	130	0	0	
25	고교선택제 정착 지원비(사립10교)	127	127	0	0	
26	체벌대안 정책개발 T/F팀 운영	123	123	0	0	
27	천호중 관리실OA 미설치분 및 특별교실환경개선	120	120	0	0	
28	강남도서관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103	96	0	7	-집행잔액
29	학교신설 적정관리 연구용역비	100	99	0	1	-집행잔액
30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100	100	0	0	
31	중대부속고자율학습실 조성	100	100	0	0	
32	전동초 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분	100	67	33	0	-BTL개축공사로 인한 임시교실 설치로 교사 준공이후에 공사시행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33	용산고 학생식당 증축공사	100	100	0	0	
34	영림중 신관 외벽보수 공사	100	100	0	0	
35	우신초 야외수영장 철거	100	100	0	0	
36	아현산업정보고 건물 노후 외벽 보수 및 도장	100	100	0	0	
37	동성고 외부계단 보수	98	97	0	1	-집행잔액
38	문,예,체 부흥 수련교육지도자 국외연수	97	97	0	0	
39	문화,예술,체육,수련 교육 부흥추진	96	77	0	19	-집행잔액
40	제한몽골학교 학교운영지 지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90	90	0	0	
41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85	65	0	20	-예산절감
42	서울교육종단연구 협력학교 운영비 지원 (혜월여중외84교)	84	84	0	0	
43	혁신학교추진자문위원회 운영	84	25	0	58	-워크숍 추진시 연수원 등 유관기관이용에 따른 예산절감
44	상명중 교실환경개선	80	80	0	0	
45	개웅초 하수관 보수 및 기타 공사	80		68	12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46	등현초 교실 환경개선	80	80	0	0	
47	오정초 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	70	70	0	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원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 A-B-C)	사유
48	삼성초 체육시설 안전매트 설치	70	70	0	0	
49	창의성 신장 평가 문항 개발 및 연수비	70	68	0	1	-집행 잔액
50	지원청(강남제외) 맞춤형 진로, 공부캠프 운영	66	66	0	0	
51	오류초 배수로설치 및 주차장 포장공사	65	65	0	0	
52	예림유치원 도서실 환경개선 (방수,전기,창호 등)	60	60	0	0	
53	염창초건물내부 환경개선	60	60	0	0	
54	전동초 공부방설치,체육관 조명시설 및 바닥보수공사	60	60	0	0	
55	광양고 체육관 연결통로 설치	56	50	0	6	
56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사업추진	56	56	0	0	
57	등원초 교사동쉼터 주변 포장 보수	55	55	0	0	
58	꿈,도전,행복, TEDx 서울교육 사업 추진	52	49	0	3	-집행 잔액
59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조사와 예방 및 복귀지 원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연구	50	24	25	1	-계약기간 미도래
60	여명학교 방과후 활동 및 시범운영	50	50	0	0	
61	동부지원청 초등 맞춤형 개별지도	50	50	0	0	
62	북부지원청 지하 문서고 정비	50	50	0	0	
63	대천교육원 환경개선, 대성리교육원 관리실 이전	50	46	0	4	-집행 잔액
64	혜화초 강당 방송설비 및 교사동 방송선로개선	50	50	0	0	
65	등명중 방송시설 교체공사	50	50	0	0	
66	오류남초 방송실 노후시설개선	50	50	0	0	
67	상도초 운동장 없는 학교 체육활동지 지원	50	50	0	0	
68	신도림고 교육기자재구입(과학실험기자재)	50	50	0	0	

## 8. 지방채 관리

### 가. 지방채<sup>28)</sup> 발행·상환

- 2010년도에는 “학교신설”과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총3,53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규 발행하였으며,
-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발행한 “교원명퇴”와 “학교교육여건개선” 지방채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에 지방채원리금상환 예산현액 845억원 중 829억원(원금 742억원과 이자 87억 2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6억원을 불용함.

### 《 지방채 현황 및 상환내역 》

(단위 : 백만원)

발행 대상 회계 연도	상환 재원 부담 주체	상환 조건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10년말 잔액 (c=a-b)	'10년 이자 납부액
					기 발행액	'10 발행액	계 (a)	기 상환액	'10 상환액	계 (b)		
<b>합 계</b>				<b>663,260</b>	<b>309,493</b>	<b>353,767</b>	<b>663,260</b>	<b>24,883</b>	<b>74,200</b>	<b>99,083</b>	<b>564,177</b>	<b>8,720</b>
'08년	교과부	2년거치 3년상환	교원 명퇴	55,861	55,861	0	55,861	24,883	30,978	55,861	0	160
'09년	교과부	5년거치 10년분 할상환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253,632	253,632	0	253,632		43,222	43,222	210,410	8,560
<b>소 계</b>				<b>309,493</b>	<b>309,493</b>		<b>309,493</b>	<b>24,883</b>	<b>74,200</b>	<b>99,083</b>	<b>210,410</b>	<b>8,720</b>
'10년	교과부	2년거치 3년분 할상환	학교 신설	149,132		149,132	149,132				149,132	
'10년	자체	2년거치 3년분 할상환	세입 결함	204,635	0	204,635	204,635				204,635	
<b>소 계</b>				<b>353,767</b>		<b>353,767</b>	<b>353,767</b>				<b>353,767</b>	

28) 지방채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



- 이는 2010년도에 보유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이자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당초 상환 계획보다 조기 상환함으로써 채무부담을 덜고 약16억원의 상환예정 이자를 감소시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 당초 상환조건과 상환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지방채를 승인한 의회 의결을 형해화하고, 2010년도와 같이 계획과 다르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예산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니는 바,
- 향후에는 세입추이와 지방채의 이자부담수준 및 상환계획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연도에 계획된 지방채 상환지출 후 발생한 예산 잔액은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지방채 상환에 대비하거나 높은 이자수익을 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기금은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인만큼, 여러 지방채 상환에 대비한 감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결산의 결과에 종속되어 운용되는 현재의 운용형태에서 벗어나 감채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각 지방채의 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지방채 상환 계획 》

(단위 : 백만원)

발행대상 회계연도	상환재원 부담주체	사업명	최초 상환연도	최종 상환연도	'10년말 잔액 (A)	상 환 계 획					상환후 잔액 (C=A-B)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B)
합 계					564,176	60,000	66,800	75,656	75,656	96,696	374,808	189,369
2009	교과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015	2024	210,410	0	0	0	0	21,041	21,041	189,369
2010	교과부	학교신설	2013	2015	149,132	0	0	49,711	49,711	49,710	149,132	0
소 계(국가부담)					359,542	0	0	49,711	49,711	70,751	170,173	189,369
2010	자체	세입결함	2013	2015	204,635	60,000	66,800	25,945	25,945	25,945	383,325	0
소 계(자체부담)					204,635	0	0	49,711	49,711	49,710	149,132	0

## 9. 예비비

- 예비비는 예산액 115억 3,200만원에서 총17건의 사업에 86억 5,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9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한성고 태풍피해 복구의 5건에 8억 1,300만원이 이월되고, 8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지출결정액은 작년대비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 연도별 예비비 지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5년 평균
건 수	17	32	19	69	132	54
예산액(A)	11,532	9,250	14,434	18,550	18,550	14,463
지출결정액(B)	8,658	8,191	2,800	12,908	11,970	8,905
지출액(C)	6,960	7,366	2,533	11,067	10,388	7,663
다음연도이월액(D)	813	588	215	1,199	1,131	789
불용액(B-C-D)	885	237	52	641	450	453
지출결정율(%) (B/A)	75.1	88.6	19.4	69.6	64.5	63.4

-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기정예산을 활용한 이후 꼭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 「중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sup>29)</sup>학교 지원」의 경우,

29) 가.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 「200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 p.69

- 2003년부터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직영전환 추진
- 2006.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07~'09년도말 직영전환 추진

나. 【위탁급식 운영 및 직영 전환】 - 「201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 p.53

〈의무교육기관 학교급식 운영 방식〉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직영 전환
-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를 1일 2식, 석식인원 20% 이상으로 신청한 학교도 2010. 5월부터 직영으로 전환

학교급식법 개정시(2006.07.19) 그동안 위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2007년 01월 20일부터 3년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와의 계약 미도래, 각종 민원 등으로 직영급식 전환이 지연되어 오던 중 직영급식 전환기간('10.01.19까지)이 경과한 후에 「예비비」 중 4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예측가능한 일반사업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성과학고 태풍 피해 복구비 2억 2,000만원,  
중곡초 및 WEE센터 태풍피해 복구비 8억 9,000만원,  
홍릉초 태풍피해 복구비 1억 8,000만원,  
중화중 태풍피해 복구비 1억 6,400만원,  
총 14억 5천만원을 태풍재해 복구비로 집행(지출 또는 이월)하였으나,
- 「태풍피해 복구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30)에 의거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sup>31)</sup>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므로, 중앙정부에서 조달이 가능한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자체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할 것이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예비비 지출결정액(86억 5,800만원) 중 8억 8,500만원이 불용된 바 예비비 지출결정시 적정규모만을 결정하여 불용 발생 규모를 최소화시켜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 적용·결정 : 위탁급식 불가피한 사유는 2011.02.28까지 인정

◆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세부기준 명시 : 2010년 3월 이내에 1일 2식을 개시하여야 하며, 학기중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1학기 석식학생의 월 평균수가 중식 인원수 대비 20%가 되어야 함.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1) 재해대책수요 복구비 지원 계획

- 복구지원 대상 : 초·중등학교 시설피해 복구
- 지원대상 : 피해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피해학교
- 지원기준

. 공립학교 : 복구소요액의 전액

. 사립학교 : 복구소요액의 50%

⇒ 「10년 8.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10.10월, 교육과학기술부)

《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 A-B-C)	승인일 (배정일)	지출 일 행위일	소관부서	이월사유
합 계		8,658	6,960	813	885				
1	중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학교 지원	4,580	4,580	0	0	03-25	03-29	학교체육 보건과	
2	남산도서관 외부 몰탈 탈락 보수 및 계측 관리	207	153	0	54	03-25	05-10	교육시설과	
3	정곡초 외벽 탈락 보수보강	207	207	0	0	04-15	05-24	강서교육 지원청	
4	전동중 체육관 방수 공사	180	180	0	0	06-24	09-30	동부교육 지원청	
5	행림초 전기인입선 지중화	108	102	0	6	08-19	08-24	동작교육 지원청	
6	한성과학고 태풍 피해 복구	270	8	212	50	09-16	12-23	시설사업소	-절대공기 부족
7	중곡초 및 WEE센터 태풍 피해 복구	1,630	884	6	740	09-16	12-17	동부교육 지원청	-재해복구공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기간 부족
8	홍릉초 태풍 피해 복구	180	180	0	0	09-16	12-05	동부교육 지원청	
9	중회중 태풍 피해 복구	175	164	0	11	09-16	12-05	동부교육 지원청	
10	삼산중 옥상방수 간급 보강	90	88	0	2	10-26	11-09	성북교육 지원청	
11	배명고 야구장 담장 복구	33	0	33	0	11-10	12-01	사학지원과	-동절기 한파 및 폭설 로 인하여 공사연장
12	중앙여고 테니스장 담장 등 복구	9	9	0	0	11-10	12-03	사학지원과	
13	오산고 변전실 유실 복구	16	16	0	0	11-10	12-24	사학지원과	
14	한성고 담장 석축 복구	27	0	27	0	11-10	12-20	사학지원과	-동절기 기온저하에 따 른 기초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15	개포고 정보화동 방수	396	381	0	15	11-29	12-22	시설사업소	
16	가락고 외벽 탈락 보수보강	270	4	260	6	11-29	12-27	시설사업소	-절대공기 부족
17	금호초 외벽 방수	280	4	274	2	11-29	12-03	성동교육 지원청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10. 채권·채무

### 가.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b>합 계</b>	244,514	11,247	233,267	19,768	3,258	16,510	4,479	1,242	3,237	259,803	13,263	246,540
토지매각대	11,272	232	11,040	1,144	536	608	2,418	20	2,398	9,998	748	9,250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562	174	2,388	255	103	152	543	37	506	2,274	240	2,034
원어민영어교 사 전세자금	3,781	0	3,781	372	0	372	333	0	333	3,820	0	3,820
대지료	227	227	0	43	43	0	45	45	0	225	225	0
대가료	146	146	0	40	40	0	119	119	0	67	67	0
수업료	1,384	1,384	0	810	810	0	790	790	0	1,404	1,404	0
기타사용료	0	0	0	0	0	0	0	0	0	0	0	0
변상금	5,719	5,719	0	442	442	0	148	148	0	6,013	6,013	0
위약금	1,933	1,933	0	185	185	0	70	70	0	2,048	2,048	0
잡수입	1,432	1,432	0	1,099	1,099	0	13	13	0	2,518	2,518	0
대여장학금	216,058	0	216,058	15,378	0	15,378	0	0	0	231,436	0	231,436

○ 201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598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97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44억 7,900만원이 소멸하였음.

- 2009년도말 현재액(2,445억 1,400만원) 대비 15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 토지 13,673천㎡ 20조 9,537억 3,600만원
  - 건물 9,615천㎡ 6조 115억 6,300만원
  - 공작물, 입목축 등 기타 310,386건에 1,878억 5,300만원으로 총 27조 1,531억 5,200만원임.
- 이는 2009년도말의 26조 3,659억 6,100만원에 비해 7,87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신설학교(강이중외4교) 및 기설학교(대왕초외1교) 부지매입과 학교 BTL 신축(신도중외 4교) 및 증·개축으로 건물가액 증가 등으로 공유재산 증가(1조 2,484억 8,40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 북아현동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과 개포고 등 건물 증·개축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로 4,61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음.
- 공유재산 중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매각한 자산을 최종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수납율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바,

《 주요 자산매각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액 (A)	징수액 (B)	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율 (C/A)	매각사유	예산 과소반영/미반영 사유
분청 외	무형자산매각	8	26	26	325%	전산 전화보증금 회수	-업무수행 도중 발생하는 부정기적 수입인 전산 전화보증금 회수금의 증가
동부교육 지원청	일반재산(토지)매각대금	258	728	728	282%	전농 6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 분할 납부 금액	-분할납부자의 일시납부
남부교육 지원청	일반재산(토지)매각대금	41	332	332	809%	일반재산 점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각 분할납부 대금	-추가 매수신청으로 인한 토지 매각 및 매각대금분납금 완납
중부교육 지원청	일반재산(토지)매각대금	68	126	126	185%	일반재산 점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각 분할납부 대금	-신규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매각대금 수입 증액
성북교육 지원청	일반재산(토지)매각대금	48	622	622	1,296%	삼선 1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 분할납부 금액	-보문4구역내(재개발) 공유재산매각액 및 삼선1구역 일부 선납금 및 완납금액 미반영

- 이는 매각대금 분할납부자의 일시납부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회계연도 중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납가능한 금액을 신속히 세입조치하는 것이 미수채권 발생을 방지하여 자산관리상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 위와 같이 크제는 예산의 1,296%에 달하는 자산매각대를 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당시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하여 예측가능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제를 위해서 향후 자산매각대의 매각시기와 징수예정금액을 정확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물품

- 200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711억 2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신규취득(매입) 등 802억 6,600만원이 증가, 매각·폐기 등 373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4,140억 6,100만원으로 다음과 같음.

《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				증감액(A-B)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A)		감(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감률	수량	금액
계	74,626	371,102	9,180	80,266	6,109	37,307	3,071	42,959	11.6	77,697	414,061
전기통신기기	14,175	57,405	78	685	933	4,472	-855	-3,787	-6.6	13,320	53,618
사무용 기기	12,397	81,374	2,880	45,945	1,596	19,438	1,284	26,507	32.6	13,681	107,881
사무용 집기	1,786	8,075	376	1,926	96	1,016	280	910	11.3	2,066	8,985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799	7,353	245	1,431	33	398	212	1,033	14.0	1,011	8,386
기계요소 및 공작 기계	1,563	16,923	36	359	60	590	-24	-231	-1.4	1,539	16,692
산업 기계	14,929	58,832	741	3,793	878	2,892	-137	901	1.5	14,792	59,733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377	2,741	474	1,657	3	11	471	1,646	60.1	848	4,387
물리시험 및 측정 기기	942	5,727	106	610	42	268	64	342	6.0	1,006	6,069
기타실험장비	5,770	32,924	797	3,233	93	783	704	2,450	7.4	6,474	35,374
기타 잡기기	21,888	99,748	3,447	20,627	2,375	7,439	1,072	13,188	13.2	22,960	112,936



- 2010년도말 물품은, 수량 77,697개  
현재액 4,140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3,071개가 증가하고,  
금액은 42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또는 부당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338
----------	-----

제출년월일 : 2011년 6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결산개요

가. 예산회계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세입·세출 예산액		7,016,644,940,000	
세입·세출 예산현액		7,165,684,595,917	
세입결산액		7,119,817,044,552	
세출결산액		6,573,690,153,679	
세계잉여금	계	546,126,890,873	
	명시이월액	0	
	사고이월액	236,114,228,435	
	계속비이월	0	
	순세계잉여금	310,010,077,868	
	국고보조금 잔액	2,584,570	

나. 재무회계의 결산

1)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연도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자 산		12,818,335,503,542	
부채와순자산	계	12,818,335,503,542	
	부 채	1,426,630,477,295	
	순자산	11,391,705,026,247	

2) 재정운영보고서

해당연도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익	6,652,094,565,941	
비 용	6,469,249,026,482	
운용차액	182,845,539,459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비 고
8,658,200,000	6,960,406,580	813,253,540	884,539,880	